가. 위험관리 조직 및 정책

1. 위험 관리체계 및 위험관리 정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에 따라 고유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함

2. 위험 관리를 위한 조직

A.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 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전략을 제·개정 할 수 있음

2) 법률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규정의 문구를 단순하게 수정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전결로 할 수 있음

B.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1)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별도로 위험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대표이사 등 사내 등기이사로 구성한 위험관리위원회는 고유재산 운용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위험관리정책을 결정하고 주요한 변동 발생 시, 이에 맞는 대처방안을 수립하며, 회사 위험관리 활동과 관련한 최고의 의사결정을 함

나. 위험관리지침

1. 위험의 종류 및 관리방안

A. "위험(Risk)"이라 함은 회사 또는 집합투자재산이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 또는 잠재적인 손실정도를 말함

B. "위험관리(Risk Management)"라 함은 위험의 측정, 관리, 보고를 통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C. "시장위험(Market Risk)"이라 함은 이자율, 환율, 주가, 파생상품 등 각종 금융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재산가치의 변동을 초래할 위험을 말함

D. "신용위험(Credit Risk)"이라 함은 채무자, 투자대상회사 또는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신용등급의 변화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재산상의 손실위험을 말함

E.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이라 함은 시장에서 거래부족이나 장애 등으로 투자증권 등을 정상적으로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재산가치의 변동을 초래할 위험과 집합투자재산에서 해지청구가 있을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위험을 말함

F. "운영위험(Operation Risk)"이라 함은 부적절한 내부절차, 직원 및 시스템 혹은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위험을 말한다.

G. "평판위험(Reputation Risk)"이라 함은 투자자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미지 또는 명성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H. "법률위험(Ligal Risk)"이라 함은 관련법규 및 제 계약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 투자자와의 분쟁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징계 등을 초래할 위험 등을 말한다.